#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22

발의연월일: 2021. 4. 30.

발 의 자:김형동·조수진·홍준표

서병수 · 권명호 · 박대수

유의동 · 김상훈 · 이철규

김석기 · 민병덕 · 최연숙

이종성 · 최형두 · 양금희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(ICT)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·연구 및 개발,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재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고도화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업 분야 ICT 융복합사업의 확산,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, 관련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급·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기 술의 연구 개발 및 기술의 보급·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(안 제36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#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·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필요한 기술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융복합기술"이라 한다)의 연구 개발 및 보급·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복합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·확산을 위하여 정보통신융복합기술의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,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의2(정보통신기술 융복합	제36조의2(정보통신기술 융복합
기반의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	기반의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
육성) ①·② (생 략)	육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
	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
	<u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·</u>
	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
	하고, 이에 필요한 기술(이하
	이 조에서 "정보통신융복합기
	술"이라 한다)의 연구 개발 및
	보급·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
	<u>할 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
	보통신융복합기술의 연구 개발
	<u>및 보급·확산을 위하여 정보통</u>
	신융복합기술의 현황에 대한
	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⑤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
	내용, 범위, 방법 및 그 밖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 정한다.</u>